

민원수수료 전자지불 개선방안 연구

김영진*, 김병곤*, 임재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e-mail : yjkim73@kict.re.kr, bkkim@kict.re.kr, jklim@kict.re.kr

A Study on Improving the Application fee E-payment

Young-Jin Kim*, Byung-Kon Kim*, Jae-Kyu Lim**

*ICT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Highwa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서론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민원신청 시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민원수수료는 납부시기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허가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1,000원)와 같이 민원수수료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민원을 신청할 때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허가수수료는 하천점용허가(공사비의 1/1,000)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수수료 금액이 결정되고, 민원종결 시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민원인이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도로 및 하천 관련 민원의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인허가 민원서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입인지는 정부에서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판매인력의 부족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다. 이러한 불편의 해소를 위해 민원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입인지 자동판매기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1]. 수입인지 자동판매기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동발급기와 같이 민원인이 별도의 수입인지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가수수료와 같이 단순히 수입인지만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인허가기관을 방문하여야 하고, 민원처리건수가 작은 인허가기관에서는 수입인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가 부담스러운 불편함이 있다.

수입인지는 유가증권 형태로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 이를 이용한 인허가기관의 각종 비리행위 발생 및 국고 누수의 우려가 있다[2]. 이러한 불편의 해소를 위해 현행제도의 보완·유지방안, 현금납부의 확대, 수입인지 자동판매기의 확대, 전자지불수단의 적극적 활용,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탑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 전자지불수단의 적극적 활용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인지대를 납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허가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민원신청 시에 적용하는 기존 전자지불절차를 확대하여, 허가수수료 및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방안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방안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과 업무흐름을 조사하여, 기능흐름과 개선된 업무흐름을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24 공통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방안을 도출하였다.

3.1 관련 법령 조사

민원수수료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

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개별적으로 금액과 지불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민원수수료 전자납부방안 수립을 위해 전자납부 대상민원을 <표 1>과 같이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도로 및 하천 관련 6종의 민원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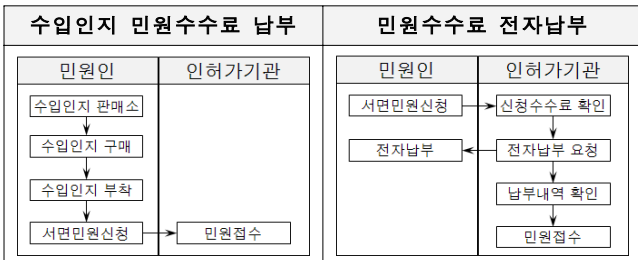
<표 1> 수수료 납부대상 민원 및 금액

민원명	관련 법령	민원수수료	비고
도로 관련 민원수수료			
(서면)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38조	1,000원	신청수수료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 제34조	공사비의 1/1,000	허가수수료
하천 관련 민원수수료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공사비의 1/1,000	허가수수료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 제38조	공사비의 1/1,000	허가수수료
하천공사허가	하천법 제30조	공사비의 1/1,000	허가수수료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하천법 제30조	공사비의 1/1,000	허가수수료

도로 및 하천 관련 민원의 수수료 금액과 지불형태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4][5]. 관련 법령에는 도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하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기능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3.2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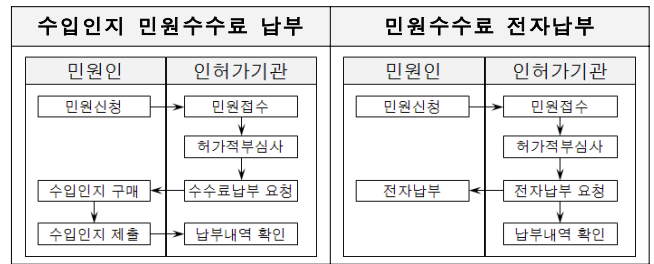
서면으로 신청하는 신청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에만 인허가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한다. 민원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 수입인지 판매소를 방문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이를 민원신청서에 부착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한다. 만약, 민원인이 신청수수료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수입인지 판매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다. 민원수수료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 인허가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납부를 요청하고, 민원인은 민원실의 PC를 이용하여 해당민원의 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 납부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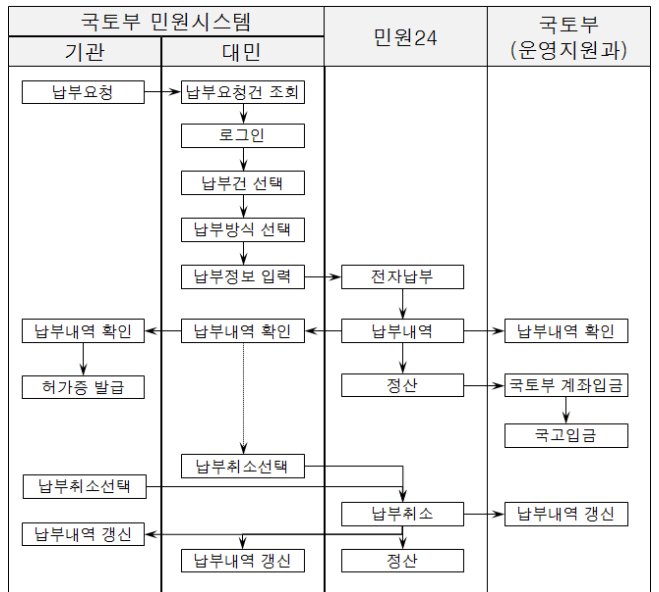
허가수수료는 해당 민원의 허가적부심사 이후에 납부금액이 결정되며, 수수료 금액이 공사비의 1/1,000로 비교적 큰 금액이다. 인허가기관은 허가수수료가 결정되면 인터넷

으로 전자납부요청을 하고, 민원인은 인허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허가수수료 납부흐름

민원인이 민원수수료를 납부하고, 인허가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민원은 종결된다. 해당 민원수수료는 국토부 계좌로 입금된 후 국고로 입금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기능흐름(안)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민원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허가수수료 및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강철희, '수입인지 자동판매기 개발에 관한 연구(시스템 기술개발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6.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2011.8.
 [3] 윤광제,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제3호, p25~50, 2008.12.
 [4] 국토해양부, 도로법 시행규칙, 2012.
 [5] 국토해양부, 하천법 시행규칙, 2012.